식품접객업 신고접수전 확인•검토일지

※ 해당란에 ○표기 또는 사실대로 기록하십시오.

검토사항별	검토(상담)내용	민원인 작성	비 고
(1) 식품위생법 제38조 영업신고제한여부	° 영업허가(신고)가 취소된 후 6개월(1년)이 경과하지 아니한 영업장소 ° 영업허가(신고)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	전산확인	
(2) 위생교육 수료여부	° 해당업종의 위생교육 수료여부 (수료증원본 확인)	교 육 필 ( ) 교육미필 ( )	
(3) 신고장소 확인	° 신고할 장소에 기존업소(이중신고) 여부확인 ° 영업장 사용면적 평수기재 ※접객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은 면적에서 제외 ° 영업장 위치확인(지하, 지상여부) 기재 ° **영업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확인**	이전업소[ ] 면적_____㎡(__평) 지상 층/지하 층 예, 아니오	
(4) 구비서류 확인	°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성적서 (지하수사용업소인 경우) ° 액화석유가스(LPG)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제출여부 ° 영업장 내 어린이놀이시설(놀이방) 설치한 경우 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 제출 여부 ° 지하층(면적 66㎡이상),지상2층 이상(면적100㎡이상)인 경우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제출여부 ° 지상1층 면적 100㎡(약 30평) 이상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안내(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) ° 건물주와 계약관계 확인 ° 국민건강증진법(금연) 위반 시 제재사항 안내	상수도, 지하수 사용함, 사용안함 제출, 해당없음 제출, 해당없음 안내받음 계약, 미계약 확인 [ ]	
(5) 공부확인	° 토지이용확인원, 건축물관리대장	상담자가 공부확인	
(6) 타법저촉 여부	° 하수도법(정화조 용량 적정여부)		
	° **주차장법, 건축법 등 위반 시 제재사항 안내** **예)복층, 불법가건물, 옥외영업장** **※ 신고수리 후 빠른 시일 내 현장확인하여 허위신고 또는 위법사항 발견시는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진행합니다.**	서명	
(7) 업태확인	° 일반음식점(한식, 중식, 일식, 경양식, 단일식, 호프·소주방) ※ 호프집, 소주방, 카페등 일반음식점에서 식사류를 취급하지 아니하고 주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임을 안내 ° 휴게음식점(다방, 과자점, 단일식, 분식) ※ 주류를 취급하지 못하며 객실설치 불가능	업종: 주메뉴:	
(8) 민원사항 관련 안내	민원발생 시 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(생활민원, 위생불량 등)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음을 안내		

위 (앞)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였으며 앞으로 시설조사 시 허위로 판명될 때는 행정처분과 아울러 해당법령에 의한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.

20 년 월 일

민원인	업소명 :	영업장 소재지: 중랑구 ________
확인사항	주민등록번호 :	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확 인 자 직급 성명 (서명 또는 인)